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3 - 08 - 016호

안 건 명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의 결 일 2023. 3. 21.

###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I. 기초 사실

##### 1.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 < 피심인의 일반현황 >

| 허가 번호 | 사업자 | 대표자 | 사업 내용 |
|-------|-----|-----|-------|
|       |     |     |       |

## II. 실태점검 결과

### 1. 점검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위치정보 관련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21.9월 ~ '22.7월)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2. 피심인의 행위사실

피심인은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등 이용약관 내용을 2차례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이유 등을 공개하지 않고 이용자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지 않고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

###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2년 12월 15일에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년 1월 2일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 III. 위법성 판단

### 1. 관련 법 규정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 이유 및 변경 내용을 공개하고 이용자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 제2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 위법성 판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이용자가 이용약관이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IV.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1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 제43조제2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별표5]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1. 기준 금액**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별표5]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별표5] 과태료 부과 기준 >

| 위 반 조 항                                                                         | 근거 법조문             | 위반 횟수별<br>과태료 금액(만 원) |     |       |
|---------------------------------------------------------------------------------|--------------------|-----------------------|-----|-------|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않거나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 위치정보법 제43조 제2항제3호  | 300                   | 600 | 1,000 |
|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 위치정보법 제43조 제2항제10호 | 300                   | 600 | 1,000 |

## 2.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별표5]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사전 통지 후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 결과를 시정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준금액의 2분의1 감경한다.

## 3. 최종 부과금액

이에 따라 위치정보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피심인에 대해 3,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V. 결론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3월 21일

위원장      한 상 혁



부위원장      안 형 환



위원      김 현



위원      김 효 재



위원      김 창 룡

